

## I |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1.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(FSANZ), 호주 브랜드 식품 데이터베이스 작업 시작
  -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(FSANZ)은 브랜드 식품 데이터베이스(Branded Food Database)를 개발 추진. 이 데이터베이스는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호주 식음료에 대한 브랜드별 정보 자료를 제공할 것임
  - 데이터베이스에는 건강별점제(Health Star Rating system)와 건강한 식품 파트너십(Healthy Food Partnership)과 같은 공중 보건 계획에 대한 정보도 포함할 예정
  -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2023년까지 전국 소매점의 진열대에 있는 모든 제품의 85%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될 것이라고 발표
  - 이용자들은 브랜드명, 식품명, 영양성분표(nutrition panel information), 원재료, 포장 크기, 제공량, 제조업체, 건강 별점(표시된 경우) 등 개별 제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임. 데이터베이스는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제품 정보를 포함한 '단 하나의 진실된 제공처 (single source of truth)'를 제공하여 소비자, 산업체, 보건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
-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주인의 식품과 영양 소비 패턴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데이터세트(data sets)와 연계될 수 있다고 함. 브랜드 식품 데이터베이스(The Branded Food Database)는 식품 및 영양 관련 계획의 일환으로 보건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음

\* 출처 : 2021년11월3일,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

## 2.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(FSANZ), 알코올 음료의 열량 표시 옵션 모색

-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대부분의 포장된 알코올 음료들이 열량(energy)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고,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류 열량 표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
-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(FSANZ)은 열량 표시 라벨 변경을 '알코올 음료에서의 탄수화물 및 당 표시' 검토와 연계할 것이라고 발표
- 개정안 준비작업은 2021년 12월에 완료할 것으로 예상됨
- 현재 알코올 음료 라벨 표시 규정에는 열량 또는 탄수화물 함량에 대해 허가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가 있지 않은 한, 열량 함량 정보가 포함된 영양성분표(nutrition information panel)를 표시해야 하는 요건이 면제되어 있음

\* 출처: 2021년 10월 21일,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

## 3.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(FSANZ), 2020-21 연간 보고서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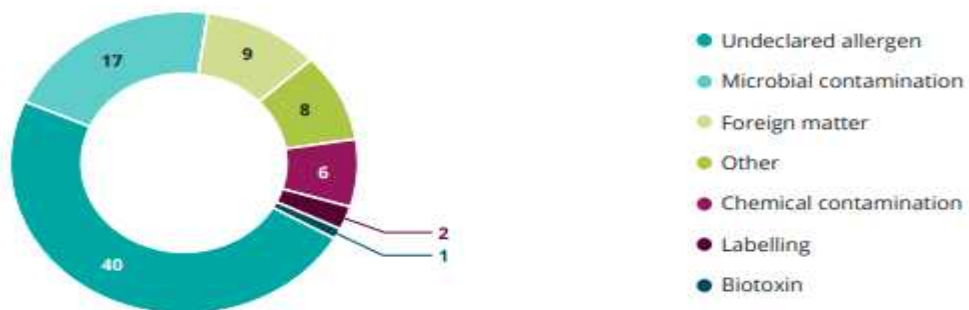
-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, 식품 표시 및 식품 규제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67%였으며,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(FSANZ)의 신뢰도는 77%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
- 보고서에서 언급된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의 주요 정책 사안은 다음과 같음
  - 1) 임신부 대상의 알코올 음료 경고 라벨 부착 검토
  - 2) 알코올 음료의 열량 표시

- 3) 첨가당의 영양표시 검토
  - 4)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한 식품 표시 요건 변경
  - 5) 안전성 평가에 대한 협력을 위해 캐나다 보건부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
  - 6) 전해질 음료 규제 검토
  - 7) 고농축 카페인 음료 규제 검토
- 보고서에 따르면,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83건의 식품 리콜이 단행되었음



그래프1) 식품 리콜 통계

- 리콜 사유로는 보고되지 않은 알러지 유발물질 함유가 제일 많았으며, 유해 바이러스 함유, 이물질 검출 등이 있었음



그래프2) 식품리콜 사유

\* 출처 : 2021년 11월 1일,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

4.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(FSANZ), 식품 및 식품 원재료로서 마약성분 (THC) 함유량이 적은 대마잎, 씨 새순 및 뿌리 사용허가 예정

-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(FSANZ)은 10월 15일 통보 회보(174-21)에서 마약 성분(THC) 함유량이 적은 대마잎, 씨 새순 및 뿌리를 식품 및 식품 원재료 사용하는 것에 대한 행정 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
- 이들 성분을 식품 공전에 정식으로 등재하기 전 업계 관련자, 일반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
-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청(APVMA)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 이번 개정안이 최대잔류 허용기준 개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서를 전달하고, 관련자들에게 허용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.

\* 출처 : 2021년 10월 15일,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

5.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(FSANZ),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 염화물 (Nicotinamide riboside chloride)을 비타민 B3성분으로 인정

-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(FSANZ)은 2021년 10월 21일 발표된 개정안 203호를 통해,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
-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 염화물(Nicotinamide riboside chloride)이 비타민 B로 인정
- 바실러스 서브틸리스(Bacillus subtilis)가 베타-갈락토시다아제( $\beta$ -Galactosidase)로 포함됨
- 호주농약동물용의약품청(APVMA)은 이들 물질의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관보 고시

\* 출처: 2021년 10월 21일,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

## 6.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(FSANZ), 초 저열량 식이요법 식품에 대한 의견 수렴

-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(the Code)의 기준 2.9.5-특수의료용도식품(FSMP) 내에 초저열량 식이요법(Very Low Energy Diet: VLED)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
-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국제 기준인 '체중감량을 위한 초 저열량 식이에 사용되는 조제 식품에 대한 CODEX 기준(the CODEX Standard for Formula Foods for Use in Very Low Energy Diets for Weight Reduction (Codex STAN 203-1995))'과의 연계를 찾고 있음
-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의 CEO인 산드라 커스버트 박사는 만약 이 신청이 허가된다면, 그 변화로 초 저열량 식이요법(VLED)에 대해 규제력을 지닌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
- 초 저열량 식이요법(VLED)은 과체중 및 비만의 식이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으며, 안전하고 빠른 체중 감량을 돕기 위해 적은 열량으로 유일한 영양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음
- 초 저열량 식이요법의 일부로 소비하기 위해 생산된 식품은 호주 및 뉴질랜드 시장에서 20년 이상 이용 가능하였으며, 국제 기준 CODEX STAN 203/1995에 따라 제조되었음. 뉴질랜드의 경우, 초 저열량 식이요법(VLED)은 기준 2.9.6 -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전환 기준(Transitional standard)에 의해 규제되지만, 호주 시장에서는 적용 가능한 기준이 없음

\* 출처 : 2021년 11월 19일,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

## III

## 통관문제사례 관련

일시	제품	제조업체	사유	결과	단위	참고
2021.9.15	건다시마 (Dried Kelp)	Namdo General Food	요오드검출 (Iodine)	4900	mg/kg	BSW 12/2016
2021.9.22	코코넛 비스킷 Coconut biscuits	Pt Mayora Indah Tbk	동 제품에 비타민 B12 허용하지 않음		n.a	n.a
2021.8.3	Seasoned baby clam meat	Samjin G.F	허용량 이상의 E. coli 검출	<2.3, <2.3, <2.3, 2.3, 24	MPN/g	MOL 11/2020
2021.7.28	건다시마 (Dried Kelp)	Young II General Food	요오드검출 (Iodine)	4580	mg/kg	BSW 12/2016

\* 출처 :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

## IV

## FTA 이행이슈 관련

(해당없음)